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우리시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의 달성, 노무비 즉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하도급 대금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 2-마항.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고)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위배 시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조건을 날인 및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고)

【공사계약 특수 조건 중 대표사항】

- ① 해당 계약은 원활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계약서에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합니다.
- ②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는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 ③ 해당 계약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 ④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전적)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8조의2 ②항에 의거 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주력 분야를 제한합니다.

제한사항 : 기반조성·포장공사업(코드번호 4989)보유업체의 (주력분야 : 토공사(000) 및 포장공사(001)를 모두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본 입찰(전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①항 4호에 의거하여 공사예정 금액*이 43억 원 미만 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 금액 = 도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되므로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에 관한 사항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금액 : 금319,262,614원

2) 100분의 98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은 예정가격으로 함

3)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①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② 위 ①항의 산정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

4)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 (위 3)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② 위 ①항의 산정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불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공사 초기부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운천초)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위치 : 부산동 778-4번지(운천초, 운산초 일원)

라. 공사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철삭후 재포장 등 1식)(불임의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는 오산시청 스마트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031-8036-679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705,180,000원(도금액 384,860,000원 + 도급자관급액 320,320,000원)

※ 참고 : 관급자 관급액 220,170,000원

바. 기초금액 : 금384,860,000원(추정가격 349,872,728원 + 부가가치세 34,987,272원)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시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유지보수 공사입니다.(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단독입찰** 대상입니다. **(“5항” 필독)**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0항” 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5항” 참조)**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7. 16.(10:00) ~ 2026. 7. 23.(10:00)**

4. 입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7. 23.(11:00) 오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및 포장공사를 모두 보유)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입) 설명일시 및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마감 시 까지 과입에 관한 사항 문의 및 열람처(감독관) : 오산시청 스마트교통안전과(031-8036-6798)**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 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액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액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써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구분 중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시 수행 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및 포장공사 모두 보유)을 100%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은 상기와 동일 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32,681,894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5,250,358원(국민연금보험료) + 3,973,692원(국민건강보험료) + 2,542,278원(퇴직공제부금비) + 522,143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849,364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386,773원(품질관리비) + 12,157,286원(안전관리비)**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9절 심사서류 부장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하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973,692원	5,250,358원	522,143원	2,542,278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가 현장명으로 가입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준공 시 사후정산)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49,364원	안전관리비	12,157,286원
-----------	------------	-------	-------------

다. 품질관리비(준공 시 사후정산)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386,773원
-------	------------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불입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채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증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청 회계과☎ 031-8036-725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청 스마트교통안전과☎ 031-8036-679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7. 15.

오산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제18조(공사관리)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의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후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공사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8절 3-가 1)-9)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 후 사후 원가계산서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사유가 발생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규정 등에 대한 준수)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과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최종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임금체불 등의 해결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미 이행 시 공사관리 부실을 사유로 공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납부)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당해 계약보증금을 발주관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시키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선금의 적용범위등)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과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과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상 지급하는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통화로 한다

제26조(선금의 신청)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코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선금신청 비율 및 시기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선금신청서, 사용각서, 지급보증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한 선금신청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선금의 반환청구)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선금반환 청구를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미 이행하거나 선금의 전액 정산없이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더 이상 계약유지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설계서 수령)설계서(변경설계서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공사감독부서에서 직접 수령한다.

제29조(지적측량 기준점의 확보)①계약상대자는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행 전 기준점 관리부서(재무과)로부터 기준점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현장 내에 기준점 존재여부 및 손·망실 여부를 확인 후 사진을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기준점 이전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하여야 한다.

- ②기준점 재설치 또는 보수에 따른 측량비 및 매설비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재설치 및 보수 후 기준점 관리부서의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기준점 현황 미파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준점 망실 및 훼손은 당해 기준 점이 속해있는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칙)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및 제4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모사전송기)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 . . .

수 급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인)

오산시(분임)재무관 귀하